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웰다잉(Well-Dying)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7. 5. 18.
행정위원회

1. 심 사 경 과

- 가. 발의일자 : 2017년 5월 11일
- 나. 발 의 자 : 마숙란 의원 외 5명
- 다. 회부일자 : 2017년 5월 11일
- 라. 상정일자 : 제20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7. 5. 16.)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마숙란 의원)

가. 제안이유

- 고령 및 핵가족의 증가로 인하여 외로이 죽음을 맞이하는 노령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자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웰다잉(Well-Dying))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웰다잉 문화조성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 웰다잉 문화조성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 추진에 대한 사항(안 제4조)
-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실시(안 제5조)
-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최광목)

○ 본 조례 제정안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라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문화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 주요내용은

-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 안 제3조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 안 제4조는 웰다잉 문화 조성 추진사업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에 관한 내용을 각각 규정하고 있음.

○ 본 조례안은

구민의 생명권 등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인 합의가 무엇보다 우선되는 영역인 연명의료결정 및 호스피스·완화의료 취지를 고려하여 우리구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려는 것으로, 죽음을 앞둔 사람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자 하는 공감대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입법체계나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웰다잉(Well-Dying)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마숙란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7
----------	-----

발의년월일: 2017년 월 일

발 의 자: 마숙란 의원 외 5 명

1. 제안이유

고령 및 핵가족의 증가로 인하여 외로이 죽음을 맞이하는 노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자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웰다잉(Well- Dying))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웰다잉 문화조성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 나. 웰다잉 문화조성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다.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 추진에 대한 사항(안 제4조)
- 라.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실시(안 제5조)
- 마.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안 제6조)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규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웰다잉(Well-Dying)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죽음을 맞이한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웰다잉(Well-Dying)(이하 “웰다잉”이라 한다)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웰다잉 문화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영등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①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웰다잉 문화 확산 및 조성사업
2. 웰다잉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
3.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사업
4. 웰다잉 교육 지도자 육성 사업
5.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구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과 관련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 물품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